

객원교원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.)객원교원의 임용대상, 임용기간, 대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객원교원은 외국인학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본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.

제3조(직급) 객원교원은 연구 및 교육경력에 따라 객원 전임강사, 객원 조교수, 객원 부교수, 객원교수로 구분한다.

제4조(임용) 객원교원의 임용은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임용 기간) 객원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6조(대우) 객원교원의 보수는 개인의 경우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